



제 438국회 (임시회)
제 2차 정무위원회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조사위원회의 청문회 제도 신설 등〉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34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회부경과 및 현행법 반영 사항	3
2. 청문회의 실시	17
3. 희생자·피해자 정의 및 피해자 의견청취 명문화	25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12. 26.

다. 회 부 일 : 2026. 3.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어 감독기관과 조사기관이 구조적으로 얽혀 있다는 ‘이해충돌’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조사 대상이 국토교통부, 공항공사, 항공사 등으로 확장되는 경우 감독기관 산하 조사구조는 ‘셀프조사’로 귀결될 위험이 있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존재함.

또한 현행법은 피해자의 조사 절차 참여를 명확히 보장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판단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향후 국가배상 및 형사책임 등의 규명 과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승

격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 명문화, 청문회 도입,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무 등 사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하여 사고조사의 공정성과 재발 방지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회부경과 및 현행법 반영 사항

□ 먼저, 개정안의 우리위원회 회부 경과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법의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조정실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있던 개정안도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어 2026. 3. 9.자로 회부되었음.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항공철도사고조사법”이라 함)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임¹⁾.

○ 개정 전 「항공철도사고조사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고 있었으나,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사고 이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음.

-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방콕발 제주항공 2216편은 무안공항에 착륙기어 장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동체 착륙하였고, 활주 중 활주로를 초과하였으며, 방위각(Localizer²⁾) 시설물과

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항공기가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동 사고에 대하여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에 착수하였으나, 해당 위원회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라는 점에서 셀프조사는 지적³⁾이 제기되고 있고, 지난 2025. 1. 14.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 사고 피해자 가족 대표는 사고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하기도 하였음.
- 이에 국회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을 2026. 1. 15. 본회의에서 의결하였고, 이후 공포(2026. 1. 27.) 및 시행(2026. 2. 28.)됨에 따라 이 법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개정안 역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⁴⁾.

□ 다음으로, 개정안의 내용 중 일부는 이미 개정된 「항공철도사고조사법」에 반영되어 있음.

○ 2026. 1. 15.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항공철도사고조사법」은 항공·

2)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위해 활주로와 기체의 방향각 측정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

3) 동아일보,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국토부 책임 의혹…셀프 조사 못 믿어”, 2025.1.4.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104/130788002/2>

SBS뉴스, “결과 못 믿겠다” 유족들 반발…‘셀프 조사’ 논란된 이유, 2025.1.7.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37928&plink=ORI&cooper=NAVER

4)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2025. 12. 29. 회부되었으나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계류 중이었음.

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제4조)하면서, 비상임위원을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하고(제6조), 위원 결격 사유를 강화하며(제8조), 상임위원의 겸직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제11조의2),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며(제12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음(제15조).

- 개정안 제4조, 제6조, 제8조, 제11조의2, 제12조의2, 제15조, 제26조 및 제28조의 내용과 개정된 「항공철도사고조사법」에 이미 반영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개정(2026. 1. 15. 본회의 의결) 전	현행(개정 후)	개정안
제4조(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항공·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국토교통부에</u>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 ----- ----- ----- <u>국무총리 소속으로</u> ----- ----- -----.	제4조(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 ----- ----- ----- <u>국무총리 소속으로</u> ----- ----- -----.
② <u>국토교통부장관은</u> 일반적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지휘·감독하되, 사고조사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 <u>국무총리는</u> ----- ----- -----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u>12인</u> 이내의 위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u>11인</u>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개정전과 같음)

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 ----- -----.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 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u>국토교통 부장관</u> 이 위촉한다.	② ----- ----- ----- <u>국무총리가</u> - -----.	② ----- ----- ----- <u>국무총리가</u> - -----.
③ (생략)	③ (개정전과 같음)	③ (개정전과 같음)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 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 ----- <u>사람은</u> ----- -----.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 ----- -----.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 후견인 또는 파산자로 서 복권되지 <u>아니한 자</u>	1. ----- ----- ----- <u>아니한 사람</u>	1. ~ 4. (개정전과 같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 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u>아니한 자</u>	2. ----- ----- ----- ----- ----- ----- <u>아니한 사람</u>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 예기간 중에 <u>있는 자</u>	3. ----- ----- ----- <u>있는 사람</u>	
<신설>	<u>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 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 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u>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 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u>정지된 자</u>	4. ----- ----- ----- <u>정지된 사람</u>	
<신설>	<u>4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u>	

	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4의3.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신 설>	4의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5. <u>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장비품의 제조·개조·정비 및 판매사업 그 밖에 항공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u>	5. <u>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장비품의 제조·개조·정비 및 판매사업자, 그 밖에 항공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이하 “항공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구성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u>	5. ----- ----- ----- ----- ----- ----- <u>임직원(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u>
6. <u>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차량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철도건설관련 시공업자 또는 철도용</u>	6. <u>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차량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사람, 철도건설관련 시공업자 또는</u>	6. ----- ----- ----- -----

<u>품·장비 판매사업자</u> <u>그 밖의 철도관련 사</u> <u>업을 운영하는 자 및</u> <u>그 임직원</u>	<u>철도용품·장비 판매</u> <u>사업자, 그 밖의 철도</u> <u>사업과 관련하여 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 중앙</u> <u>행정기관, 지방자치단</u> <u>체, 공공기관 및 관계</u> <u>기관·법인·단체(이</u> <u>하 “철도사업자등”이</u> <u>라 한다)의 대표자 또</u> <u>는 임직원·구성원으</u> <u>로 재직하고 있거나</u> <u>퇴직한 날부터 3년이</u> <u>경과되지 아니한 사람</u>	----- ----- ----- ---<u>임직원(퇴직한 날</u> <u>부터 3년이 경과되지</u> <u>아니한 자를 포함한</u> <u>다)</u>
<신 설>	7. <u>항공사업자등 및 철도</u> <u>사업자등으로부터 최</u> <u>근 3년 이내에 연구개</u> <u>발과제 등 총 1천만원</u> <u>이상의 용역을 수탁하</u> <u>여 수행하고 있거나</u> <u>수행하였던 사람</u>	7. <u>국토교통부 소속 공무</u> <u>원으로 근무하고 있거</u> <u>나 퇴직한 날부터 3년</u> <u>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u> 8. 「<u>한국공항공사법</u>」에 따른 <u>한국공항공사</u> 또 는 「<u>인천국제공항공</u> <u>사법</u>」에 따른 <u>인천국</u> <u>제공항공사</u>에 <u>근무하</u> <u>고 있거나 퇴직한 날</u> <u>부터 3년이 경과되지</u> <u>아니한 자</u> 9. <u>국토교통부, 「한국공</u> <u>항공사법</u>」에 따른 <u>한</u> <u>국공항공사, 「인천국</u> <u>제공항공사법</u>」에 따른 <u>인천국제공항공사, 항</u> <u>공관련 사업을 운영하</u> <u>는 자 및 철도관련 사</u> <u>업을 운영하는 자로부</u>

		<u>터 최근 3년 이내에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u>
<u><신 설></u>	<u>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히 해임되거나 해촉된다.</u>	
<u><신 설></u>	<u>③ 위원회는 위원(위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 다)이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항공사업자 등 및 철도사업자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신 설></u>	제11조의2(겸직금지 등) ① <u>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u> ② <u>위원장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u> ③ <u>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② 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u>
<u><신 설></u>	제12조의2(회의록의 작성	제12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그 밖에 회의록 및 녹음·녹화기록의 작성·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및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직무중사의 제한)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5조(직무중사의 제한)
① 위원회는 항공·철도 사고등의 원인과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항공·철도 사고등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시켜서는 아니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	① (개정전과 같음)

	<u>여 이해관계자의 대리인</u> <u>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u> <u>관여하였던 경우</u> 5. <u>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u> <u>상이 된 처분 또는 부</u> <u>작위에 관여한 경우</u> 6. <u>위원이 속한 법인 등</u> <u>(최근 3년 이내에 속하</u> <u>였던 경우를 포함한다)</u> <u>이 해당 사안에 관하</u> <u>여 자문, 연구 또는 용</u> <u>역 등을 수행한 경우</u> ② <u>제척의 원인이 있으</u> <u>면 위원장은 직권으로</u> <u>또는 해당 사안의 이해</u> <u>관계자의 신청에 의하여</u> <u>제척을 결정한다.</u> ③ <u>위원에게 공정한 직</u> <u>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u> <u>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u> <u>당 사안의 이해관계자는</u> <u>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u> <u>위원회는 의결로 이를</u> <u>결정한다.</u>	
② <u>제1항의 규정에 해당</u> <u>되는 위원은 해당 항공</u> <u>· 철도사고등과 관련한</u> <u>위원회의 회의를 회피할</u> <u>수 있다.</u> 제26조(안전권고 등) ① 위	④ <u>위원이 제1항 또는</u> <u>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u> <u>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u> <u>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u> <u>있다.</u> 제26조(안전권고 등) ① --	② <u>피해자 또는 조사대</u> <u>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u> <u>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u> <u>사정이 있는 경우에는</u> <u>위원회에 기피 신청을</u> <u>할 수 있고, 위원회는</u> <u>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u> <u>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u> <u>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u> <u>지 못한다.</u> ③ <u>제1항 또는 제2항의</u> <u>사유에</u>----- ----- ----- -----. 제26조(안전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활동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사고조사과정 중 또는 사고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철도사고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안전권고 또는 건의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안전권고(이하 “권고”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권고 또는 건의에 대한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 또는 건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전과 같음)

② -----

---90일 이내에 조치계획-----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그 조치계획 및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u><신 설></u> 제28조(정보의 <u>공개금지</u>)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해당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u>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철도사고등과 관계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u>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라 <u>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u>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u>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u> 제28조(정보의 <u>공개제한</u>) ① ----- ----- ----- ----- ----- ---<u>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후단 삭제> 다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항공·철도사고등과 관계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항공·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 및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u> ③ -----<u>공개를 제한할</u>----- ----- -----.	제28조(정보의 <u>공개금지</u> 등) ① · ② (개정전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작성·수집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열람·복사 신청을 허용하여야 한다.</u>
--	--	--

□ 이와 같이 개정안의 내용 중 이미 현행법에 반영된 조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논의의 실익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겸직금지 대상(개정안 제8조제2항, 현행법 제11조의2), 회의록의 공개(개정안 제12조의2제2항), 피해자 등의 열람·복사 신청권(개정안 제28조제3항)의 경우 현행법과 개정안의 내용이 상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도입 여부를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추가 논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겸직금지 대상(개정안 제8조제2항, 현행법 제11조의2)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상임위원에 대해서만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모든 위원에 대해서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⁵⁾되며, 이 중 상임위원 2인⁶⁾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되며, 나머지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있음.

- 개정안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비상임위원의 경우 다른 직을 겸

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③ 상임위원의 직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의5에 따라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임기제 2인을 임명함.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특성상 검직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다음으로, 회의록의 공개(개정안 제12조의2제2항)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와 유사한 개정안을 논의하여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대안반영폐기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대표발의)⁷⁾에서는 개정안과 유사하게 회의록 공개 규정⁸⁾을 두고 있었으나,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현행법⁹⁾과 같이 반영되었음.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위원들의 자유롭고 전문적인 의견 개진을 저해할 가능성 등으로 인해 지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반영된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7) 2025. 4. 7. 발의, 의안번호 2209629

8)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제12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작성·보존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9)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그 밖에 회의록 및 녹음·녹화 기록의 작성·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마지막으로, 개정안에서 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작성·수집한 자료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복사 신청권(개정안 제28조제3항)을 두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이와 유사한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를 반영한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대안반영 폐기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대표발의)¹⁰⁾에서는 조사의 각 단계별로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취지를 반영¹¹⁾하여 현행 제28조제2항¹²⁾을 신설하였음.

□ 아래에서는 개정안의 내용 중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함.

10) 2025. 4. 7. 발의, 의안번호 2209629

11)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4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전문위원 임종수** 이연희 의원님 안에서 제시하신 조사의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는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현행 28조에서도 사고조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 공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

○**정점식 위원** ...오히려 각 단계마다 유가족들에게 소위 정보공개요구권을, 유가족이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적정한 범위를 공개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해서 유가족의 소위 알권리를 충족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유가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1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정보의 공개제한)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해당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항공·철도사고등과 관계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 및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청문회의 실시

- 개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중대 항공·철도사고에 대한 청문회 실시 및 국가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증인 등의 출석요구 절차(안 제19조의4), ▲증인 등의 출석의무(안 제19조의5), ▲증인 등의 선서(안 제19조의6), ▲증인 등의 보호(안 제19조의7), ▲검증(안 제19조의8) 등 청문회와 관련한 절차 및 의무 등을 규정하며,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안 제35조)하려는 것임.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19조의2(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인명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항공·철도사고등에 대하여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2.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

	<u>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u> <u>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 <u>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청문회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u> <u>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제19조의3(국가 등의 지원) 위원회는 국가기관 등에 청문회 실시를 위한 장소 협조 및 행정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신 설></u>	<u>제19조의4(증인등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u> <u>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u>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u>

<신 설>

제19조의5(증인등의 출석의무 등) ① 위원회로부터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등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등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19조의6(증인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19조의7(증인등의 보호) ① 증인등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등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신 설>

제19조의8(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항공·철도사고등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제35조(사고조사방 해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 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 등의 경 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 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 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을 실시할 위 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사고조사방해의 죄)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u> 6. <u>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 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u> 7. <u>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u> 8. <u>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감정인</u> 9. <u>증인등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u>
---	---

□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회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인명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항공·철도사고 등에 대하여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함.

○ 청문회는 사고 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는 점에서 공청회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증인 등의 출석 및 선서, 자료 등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 선서한 증인 등이 위증하는 경우 위증의 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조사위원회가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둔 입법례를 살펴보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¹³⁾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¹⁴⁾에 따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있음.

13)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14)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33조(청문회의 실시) ① 조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 참고로, 개정안은 이와 같은 조사위원회의 청문회 실시 관련 규정과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음.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개정안에 따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항공·철도사고에 대해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전 의무적으로 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사건 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증언·진술 등을 청취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핵심 증거 등을 확보함으로써 항공·철도 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현행법에 이러한 청문회 실시 근거를 신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행 의견수렴 제도 및 공청회 제도와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련 부처 의견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현행법 제24조¹⁵⁾에서 관계인 등 의견수렴 제도 및 주요 사실 관계와 기술적 쟁점을 검증할 수 있는 공청회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청문회 도입이 기존 절차와의 기능적 중

1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해당 항공·철도사고등과 관련된 관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인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 참고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청회 운영지침」(위원회 훈령)에서는 항공·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사고조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청회에서 확인된 사실은 사고조사 최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¹⁶⁾.

- 따라서, 현행 공청회 제도 외에 별도의 강제적인 증언 청취 및 증거 조사 등이 가능한 청문회 제도를 신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의견, 현행 공청회 제도 등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과 같이 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청문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항공·철도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6)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청회 운영지침」(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훈령) 제2조(공청회 개최 등) 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확한 사고원인규명과 사고조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일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항공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2.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항공·철도안전 및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⑤ 공청회에서 확인된 사실은 사고조사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피해의 중대성 외에도 청문회 개최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청문회를 실시할지 여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희생자·피해자 정의 및 피해자 의견청취 명문화

☐ 개정안은 현행법에 희생자 및 피해자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안 제2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

[illegible]

관련된 관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u>관계인</u>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② ----- ----- --<u>피해자 등 관계인</u>----- -----.
---	---

□ 현행법 제24조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해당 사고와 관련된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인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¹⁷⁾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와 같은 의견청취 및 공청회 과정에서 항공·철도사고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사고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또한, 개정안 제2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희생자를 항공·철도사고등으로 사망한 사람, ▲피해자를 희생자의 가족 및 항공·철도사고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희생자 제외)과 그 가족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음.

1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해당 항공·철도사고등과 관련된 관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인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이와 같은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취지는, 개정안의 내용 중 ▲피해자의 청문회 경과에 관한 정보 제공 신청권(개정안 제19조의2제4항), ▲피해자 등 의견진술권(개정안 제24조), ▲피해자의 자료 열람·복사 신청권(개정안 제28조제3항) 등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국제 기준 등에서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조사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 유가족 등이 조사 절차에 참여할 경우 조사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당사자로부터 사고조사기관이 독립적이어야 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조사에 참여해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음.

ICAO DOC 9962

3.2.2 The intent of “independence” is that the [Accident Investigation Authority] shall be functionally independent, in particular from the State civil aviation authorities responsible for airworthiness, certification, flight operation, maintenance, licensing, air traffic control or airport operation and, in general, of any other party whose interests could conflict with its ability to conduct its work, without interference or influence from other organizations.

8.5.2 Victims and their families are not permitted to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 국무조정실도 개정안에 대해 국내외 기준상 사고조사에서 피해자 및 유가족의 조사 참여를 제한하는 원칙과 충돌하여 기술적·전문적 조사 절차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아울러, 개정안 제2조의 정의 규정은 앞서 살펴본 관련 개정안의 내용이 반영되는지 여부에 맞추어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106